

III. 제조물책임제도와 유사제도의 비교

자료제공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 불법행위책임제도와의 비교

제조물책임법이 없는 경우에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①加害者(제조업자)의 과실 ②손해의 발생 ③손해의 발생과 제조업자의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함으로써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제조물의 결함 ②손해의 발생과 결함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즉 주관적인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요건이 객관적인 제조물의 「결함」으로 전환된 것이다.

■ 리콜제도와의 비교

가. 리콜제도의 의의와 대두배경

리콜제도는 제품이 제조된 후에 불안전한 점(결함)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위해·위험의 원천을 제거하거나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위해나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제조(수입), 유통, 판매업자가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당해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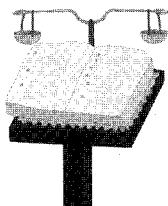
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합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교환, 수리, 환불)을 취하는 소비자보호제도이다.

또한 리콜제도는 제조자가 자사제품에 대한 안전성 결함사실을 생산과정이나 제품의 최종 출하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 가운데서 결함을 발견한 경우, 당해 결합제품 전체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제품의 결함내용을 구매자인 유통, 판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매스컴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결합제품을 시장이나 소비자로부터 거두어 들여 결함이 없는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수리, 환불해 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대사회가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의 고도화된 경제구조로 변모함에 따라 상품의 다종, 다양화, 소비자의 정보부족, 고도기술상품의 출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개발 상품과 수입상품 등이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결합상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해의 예방을 위해 제조업자가 결합상품을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회수하여 위험을 제거하는 활동이 실시되면서 리콜제도가 소비자의 위해예방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었다.

나.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의 비교

오늘날 제품의 다양화, 복잡화, 고도화 현상은 소비자와 제조자 사이의 제품관련 정보와 위험회피



능력에 대한 격차를 날로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에서 결함상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사전예방제도로서 『리콜(Recall)제도』를, 손해가 발생한 후 시구구제제도로서 『제조물책임(PL)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제도는 상품의 결함에 기인하여 문제가 발생된 이후의 개별문제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갖고 있을 뿐, 잠재적인 위해요인의 제거 등 위해의 예방에 대하여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결함제품에 대한 사전 시정조치를 위한 수단의 강구 및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한 제도로서는 리콜제도가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사업자는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가운데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제품에 대하여 이를 조기에 신속히 회수하여 시정하지 않았다가 PL사고가 발생하면 PL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의하여 더 큰 손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도 자사제품이 외면당하게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다. 개별법에서의 리콜제도 실시현황

○ 소비자보호법상의 리콜제도

1996년(3차 개정)에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서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결합시정제도와 정부의 강제적인 결합시정제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리콜은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 소비자보호법 제6조 1항의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험을 계속·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정부에서 수거·파기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위해물품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시·도지사)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31항(수거·파기명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수거·파기를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리콜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소비자보호법상의 리콜절차는 결합제품 관련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결함의 위험성을 확인한 다음 당해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수리·교환·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리콜제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1999년 9월 7일에 개정(법률 제6,019호)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TV, 오디오,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등의 전기용품 제조업체 및 판매업자는 안전도가 불량한 제품에 대해 리콜을 해야 한다.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종전에는 전기용품 중에 화재·감전 등의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기용품에 대하여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 제조하도록 하고, 화재·감전 등의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법 제5조 및 제10조).

둘째,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은 당해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하도록 하고,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

기용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며, 전기사업자 등은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법 제6조 및 제7조).

셋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 당해 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법 제8조).

따라서 화재나 감전 등 전기제품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정부가 제조업체나 판매업자에게 관련 제품을 개선하거나 수거 파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제조 및 판매업자들은 언론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일정기간을 정해 교환이나 환불 수리 등을 해야 한다. 만약 리콜명령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며, 또 정부는 리콜명령을 내리는 이외에 직접 수거나 파기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법의 집행력을 강화하였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리콜제도
2000년 12월 29일 품질경영촉진법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법률 제6,315호)」으로 개정되면서 2001년 7월 1일부터 공산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동법에서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지정, 안전검사기준의 마련, 안전검사의 표시 및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의 지정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제조하는 자(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제조하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공산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9조).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를 실시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공장 또는 창고에 있거나 유통중인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검사기준의 마련

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을 안전검사대상공산품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고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안전검사대상공산품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 및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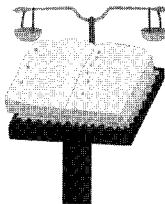
2. 성분·성능·규격 기타 안전에 관련된 사항

3. 검사방법

4. 표시사항 및 방법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는 안전검사기준에서 당해 공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연령 또는 용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검사의 표시의무 및 유사표시나 표시삭제



의 금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산품 또는 그 용기 및 포장물에 안전검사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 등(이하 “안전검사표시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안전검사표시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영업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 또는 그 용기 및 포장물의 안전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안전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업자는 안전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 파기, 수거명령 등 리콜제도

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표시등이 없을 때에는 당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

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파기 또는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 사실을 공표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기 또는 수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내야 한다.

■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와의 비교

가.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의 의의

소비자는 각종 물품의 사용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부당거래·계약불이행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피해 유형별로 보상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이다.

이 규정은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소비자피해보상제도는 제품의 하자·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막론하고 적절하고도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마련한 임의기준이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

는 법률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보상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리콜제도 및 제조물책임제도와의 비교

개별제품의 품질의 하자로 인하여 사업자가 피해소비자에게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 피해보상을 해주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제도는 제조물의 위해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제품을 회수하여 소비자안전을 예방하는 리콜제도와는 다르다.

또한 안전성이 결여된 결합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입힌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조물책임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을 사후구제제도이지만 소비자피해보상제도는 품질상의 하자와 제조물의 결합으로 인한 피해 모두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의 보상기준을 정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제조물의 결합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한 것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산품의 경우에 제조물의 결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보상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① 식료품의 경우 부작용이나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임금배상

② 전세버스, 철도, 항공기, 선박 등 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입은 손해배상

③ 의약품의 부작용,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의료용구의 결합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임금 배상

■ 제품안전 인증제도와의 비교

가. 제품안전 인증제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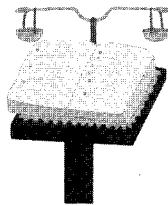
제품안전규제라 함은 위험·위험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제품별 또는 업종별로 법률에 의한 안전기준을 설정, 안전전담기관 설치,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단속 또는 사업자의 안전준수의무의 부과 등 행정법적인 규제를 말한다.

행정상의 안전규제는 제품사고방지를 목적으로 한 제품의 제조·판매에 있어서 충족해야 할 최저 기준을 정한 단속규정이며(기업의 안전대책의 가이드라인이라도 함) 제품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 구제를 규정하는 제조물책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접의 의의나 목적을 달리 하고 있고, 이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 소비자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품안전을 규제하는 방법은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위반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유통된 이후에 기준위반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회수를 명령하거나 벌칙을 가하는 방법이 있다. 안전규제와 제조물책임의 양자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규제에 적합하더라도 제조물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다.

다만 안전규제에 적합하지 않는가를 결합판단의 중요요소가 되며 안전규제에 부적합한 제품이 사고를 일으키면 안전규제는 제품안전의 최저기준이므로 결함이 추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처럼 외국 특히 유럽과 미국의 거래선으로부터 특정의 안전규격에의 적합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각각 국가의 제품안전규제가 있는데, 구미에서의 안전규격이 수행하는 역할은 제품안전규제를 보완하여 규제에 실효성을 지속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나. 외국의 제품안전 인증제도의 현황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해 규제대상으로 하는 제품군을 지정하고 그 제품군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기준을 정하여 성령 등에 의해 제시되는 것이 많다. 소비생활용 제품이나 가정용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통산성령에 의해 안전기준이 정해져 있고,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JIS 규격을 채용하고 있으며 제품 자체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JIS 규격의 인용은 없다.(다만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JIS 규격에 정해진 의료기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소비생활용 제품에 대해서는 연방법인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 CPSA)에 의해 규제의 틀이 정해져 있고, 이 법률에 기해 설립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제품마다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안전기준은 행정규칙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 안전기준 중에는 ANSI 규격이나 UL 규격 등의 민간기관이 작성하는 안전규격에 적합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다수이며, 또 각 주에서도 각각 제품안전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법에 “UL의 인증을 받을 것”이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유럽에서는 제품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는 달성해야 할 요구사항만을 규정하고 개개의 제품의 기술적인 안전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개개의 국가규격에 위임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국가에 의해 승인된 규격을 제시하고 이것에 적합한 경우는 법률상의 요구사항은 만족시키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규격 그 자체는 강제는 아니고 그 규격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인정되면 법률위반이 되지 않으나, 현실로는 규격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을 준수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된다.

다. 제품안전 인증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의 관계

① 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규제

제조물 사고에 있어서 배상책임의 법리가 엄격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무과실책임”에 기한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본래의 목적은 피해자의 구제에 있고 제품의 안전성 향상은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유통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일정한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직접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품의 안전성의 확보라는 목적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으로 대표되는 제품사고의 책임추궁법리와 제품안전에 관한 법규제가 마치 차의 양 바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본 경우 제조물책임법과 제품안전법규는 성격이 다르지만, 상호보완하며 합침으로써 사회 전체로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민사법의 영역에 속하고 사인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법규이며 제품안전법규는 단속하기 위한 행정법규이다. 따라서 양자의 사이에서 반드시 정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판단기준도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제품의 결함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행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결함이 없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기준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민사상의 책임의 유무는 안전기준에 적합한가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안전기준에의 적합은 하나의 요소가 되므로 보다 종합

적인 시점에서 제품의 결함이나 제조자의 안전배려의 유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성능보장기간이나 국가검정기관의 품질검사합격과 결함 유무의 관계에 대하여 변압변류기 폭발사건(대법원 1992. 11. 24. 92다18139판결)의 판결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성능보장기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은 ‘피고(제조자)가 이 사건 변압변류기의 성능을 정상가동 후 1년간 보장하고 성능보장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수리를 하여야 하되 원고가 사용불가라고 판단할 때에는 피고가 즉시 재제작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성능보장은 제작공급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목적물에 결합 내지 하자가 있을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보수, 교환하는 등 불완전이행을 추월할 것을 약속한 이행담보의 약정으로서 그 보장기간은 그 이행담보기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시는 피고(제조자)가 보장한 성능보장기간 내에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 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결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즉,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성능보장기간 내에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여부와 관련없이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변압변류기가 한국전기통신 연구소(1985년부터 한국전기연구소)의 검정에 합격한 후 원고에게 납품되었으므로 결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 바, 이 판결에서는 위 주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행정상 안전기준이라는 것은 행정상의 공익의 확보를 위해 정해진 것이므로 민사책임인 제조책임과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며, 제조물책임의 귀책근거인 결함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결정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상 단속규정을 충족

하였다고 하여 제조자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국가검정기관의 품질검사에 합격하였다고 이 사건 변압변류기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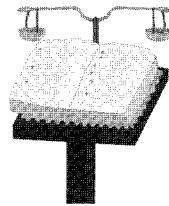
② 안전규격과의 관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안전 규격이 있다. 유럽·미국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정의 안전규격에 적합할 것을 조건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에 대하여 제3자 기관의 인증을 받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표준화제도와 아울러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정부의 관여정도, 강제성 여부 등에 따라 그 형태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품질인증제도가 자국내 유통제품의 생산이나 소비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통점이 있다.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① 적절하고 일관된 품질을 보장(보증)함으로써 제품의 신뢰도를 증진시키며 ② 안전, 환경보호 등을 통하여 소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으며, 특히 소비자측면에서는 품질인증마크는 소비자의 제품선택(구매)과정에서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정보전달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품질인증제도는 국가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쳐, 특정 국가가 품질인증제도를 차별적, 제한적(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 기술장벽으로서 구제간 무역거래의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별로 상이한 표준 및 인증제도로 인하여 외국의 표준규격에 맞도록 상품을 변형하거나 외국의 표준에 맞는 새로운 생산시설을 구비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조정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수출국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수입국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표준화의 차이가 어느 정도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수입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제조물책임제도와 유사제도의 연계방안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며, 따라서 결함 없는 제품의 제조판매는 제조업자의 가장 중요한 경영과제이고, 정부도 제품안전관리가 중요한 행정목표 중에 하나이다.

안전한 소비생활의 영위는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선진경제사회를 지향하는 소비자정책의 기본 목표에 부합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며, 또한 소비생활용 제품의 안전성강화는 소비자들의 안전 확보 뿐만 아니라 국제교역에서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빌미로 한 간접적인 무역장벽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의 소비생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는 수출제품의 대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도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에 수입되는 개발도상국의 안전취약 제품과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안전관리제도가 소관 품목별로 품질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일본의 경우는 별도의 단일법을 제정하여 안전 관리 전담기관의 설립, 통일된 안전기준의 제정, 위해제품 시정조치 등 체계적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OECD회원국들은 소비자 안전 제도의 기초가 되는 위해정보 교환시스템과 사업자의 위해제품 보고체계 등을 갖춰 수집한 위해정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안전기준의 강화나 위해

제품의 근절 등을 통한 소비자안전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영국)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의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비교·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관리 제도의 개편방안과 제조물책임법과 연계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적으로 각국의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제품안전규제의 흐름을 감안해 보면 기존의 제품안전 규제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즉 제품안전규제가 ⑦ 제조업자의 제품설계·제조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을 제한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확보와 기술진보를 저해하고 ⑧ 일률적으로 정부인증을 의무화한 제도가 제조·판매업자에게 불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경제의 세계화 진전으로 국제적인 상호승인 추진 등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루는 제도의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사업자 책임이며, 제조·판매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제품의 안전확보와 소비자정보제공 등에 노력해야 한다. 제품의 안전확보라는 정책목적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규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효율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제조물책임 배상보험의 보급과 안전대책에 따른 보험요율을 개정하는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조악한 제품이 시장에서 배제되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제조·판매업자의 자율적인 대처를 통해 제품안전이 확보되는 규제체계를 지향하여야 하며, 나아가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